KOSHA GUIDE

C - 91 - 2015

- (16)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 - (가)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
 - (나) 피난층 및 피난안전구역으로의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
 - (다) 화재발생 시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
 - (라) 피해저감을 위한 사항
 - (마)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전승인절차에 관한 사항
 - (바) 화기사용작업 또는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의 비산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
- (17)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작성하여 공사의 준공일 까지 보관하여야 하며, 훈련시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 태세 등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.

6. 대응 및 복구

- (1)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화재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초기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 5인 이상으로 초기대응반을 구성하여야 한다.
- (2) 초기대응반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- (가) 화재발생 장소 등 현황 파악
 - (나) 인근 소방관서로의 화재발생 신고
 - (다) 현장 내 근로자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
 - (라) 화재 초기 대응
 - (마) 구조 및 응급조치
 - (바)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화재정보 제공
 - (사) 그 밖에 화재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(3)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초기대응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이 때 초기대응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5.2절(15)항 및 (16항)의 교육 및 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 - (가) 화재 발생 장소 확인 방법